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5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최혁진 · 민병덕
임호선 · 이연희 · 박정현
남인순 · 서미화 · 김우영
김남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.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.

또한,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, 폐업 및 취업 지원,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

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)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정부는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(이하 이 조에서 “경영위기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악화의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다.

1.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2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
3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
4.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선별 및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

이용할 수 있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정부는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(이하 이 조에서 “경영위기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악화의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다.</u> <u>1.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</u> <u>2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</u> <u>3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</u> <u>4.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</u> <u>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은</u>

제2항에 따른 선별 및 안내가
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
하기 위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
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
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수집한
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
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
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
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간
협력하여야 한다.